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321 발의연월일: 2025. 5. 1.

발 의 자: 민형배·강유정·손명수

조승래 · 조계원 · 이성윤

염태영 · 이해민 · 황정아

한준호 · 모경종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치와 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언어 사용을 위해 현행법에 표기된 '지방'이라는 표현을 없애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지방대학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조직을 뜻하는 표현으로써 중앙에 대한 종속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평적·가치중립적 개념인 '지역'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이에 '지방대학'의 명칭을 '지역대학'으로 정비하여 위계적 구조를 배제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명, 제1조 등).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지역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지방대학"을 "지역대학"으로, "지방대학의"를 "지역대학의"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대학"을 "지역대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대학의"를 "지역대학의"로, "지방대학을"을 "지역대학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지방대학의"를 "지역대학의"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대학"을 "지역대학"으로 한다.

제4조 중 "지방대학"을 "지역대학"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지방대학"을 "지역대학"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제1항·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지방대학"을 각각 "지역대학"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지방대학의"를 "지역대학의"로 하며, 같은 항 제8호·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5항 중 "지방대학"을 각각 "지역대학"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대학"을 각각 "지역대학"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지방대학"을 "지역대학"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지방대학"을 각각 "지역대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지방대학의"를 "지역대학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제6호 및 제8호 중 "지방대학"을 각각 "지역대학"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지방대학"을 "지역대학"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중 "지방대학에"를 "지역대학에"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지방대학"을 "지역대학"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대학"을 각각 "지역대학"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지방대학의"를 "지역대학의"로, "지방대학을"을 "지역대학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지방대학의"를 각각 "지역대학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대학이"를 "지역대학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대학의"를 "지역대학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대학의"를 "지역대학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지방대학의"를 "지역대학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대학에"를 "지역대학에"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대학의"를 각각 "지역대학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대학에"를 "지역대학에"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지방대학의"를 "지역대학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대학을"을 "지역대학을"로, "지방대학으로"를 "지역대학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대학이"를 "지역대학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대학이"를 "지역대학이"로, "지방대학의"를 "지역대학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대학으로"를 "지역대학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지방대학의"를 각각 "지역대학의"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지방대학의"를 "지역대학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지방대학은"을 각각 "지역대학은"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지방대학"을 각각 "지역대학"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지방대학의"를 각각 "지역대학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조제1항 중 "지방대학의"를 "지역대학의"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0항 중 "지방대학"을 각각 "지역대학"으로 하고, 같은 조제11항 중 "지방대학"을 "지역대학"으로, "지방대학의"를 "지역대학 의"로 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대학"을 "지역대학"으로, "지방대학을"을 "지역대학을"로, "지방대학법인"을 "지역대학법

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지방대학법인"을 각각 "지역대학법인"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역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에 관한 법률	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u>지방대학</u> 및	제1조(목적) <u>지역대학</u>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지방대학의</u> 경쟁력 강화 및 지	<u>지역대학의</u>
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u>지방대학</u> "이란 「수도권정	1 <u>지역대학</u>
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	
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	
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	
다.	.
2. "지역균형인재"(이하 "지역	2
인재"라 한다)란 <u>지방대학의</u>	<u>지역대학</u>
학생 또는 <u>지방대학을</u> 졸업한	<u>의지역대학을</u>
사람을 말한다.	
3.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란	3

규제특례를 통하여 <u>지방대학</u> 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 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u>지방</u> 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지 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 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u>지방</u>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법을 적용한다.

제2장 <u>지방대학</u>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등 제5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u>지방대학</u> 및 지 역인재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 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 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u>지역대</u>
학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u>지역</u>
대학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
<u>대학</u>
제2장 지역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등
제5조(<u>지역대학</u>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u>지역대학</u>
<u>지역대학</u>

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
 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u>지방대학</u>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 시책과제 및 중기·장기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 3. <u>지방대학</u>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 4. <u>지방대학</u>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 5. <u>지방대학</u>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 한 사항
- 6. <u>지방대학의</u> 특성화에 관한 사항
- 7. (생략)
- 8. 그 밖에 <u>지방대학</u> 및 지역인 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 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 <u>지역대학</u>
 2. <u>지역대학</u>
3. <u>지역대학</u>
 4. <u>지역대학</u>
 5. <u>지역대학</u>
 6. <u>지역대학의</u>
 7. (현행과 같음) 8 <u>지역대학</u>
<u>지역대학</u>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 략)

⑤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u>지방대학</u>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본 계획의 수립절차,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연 도별 <u>지방대학</u> 및 지역균형인 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 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u>.</u>
④ (현행과 같음)
(5)
<u>지역대학</u>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①
<u>지역대학</u>
②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제8조에 따른 <u>지</u>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③ ~ ⑤ (생 략)

제3장 <u>지방대학</u>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 제8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u>지</u> 방대학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 부장관 소속으로 <u>지방대학</u>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조정한다.
 - 1. ~ 3. (생략)
 - 4.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u>지방</u> 대학의 지정에 관한 사항
 - 5. <u>지방대학</u> 및 지역인재와 관 련된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 한 사항
 - 6. <u>지방대학</u> 및 지역인재 육성

기역대
<u>학</u>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장 <u>지역대학</u>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제8조(<u>지역대학</u>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u>지</u>
역대학
<u>지역대학</u>
<u>지역대학</u>
<u>지역대학</u>
<u>지역대학</u>
<u>지역대학</u> ②
<u>지역대학</u> ②
 2
(2),
 ② 1. ~ 3. (현행과 같음) 4 <u>지역</u> 대학의
 ② 1. ~ 3. (현행과 같음) 4 <u>지역</u> 대학의

지원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7. (생략)
- 8. 그 밖에 <u>지방대학</u> 및 지역인 재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 사 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 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 ②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 1. 2. (생략)
 - 3. <u>지방대학</u> 및 지역인재 육성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 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③ ④ (생 략)

제4장 <u>지방대학에</u> 대한 지원 등 제10조(교원의 참여 확대) 중앙행 정기관의 장은 소속 위원회별로 <u>지방대학</u> 교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7. (현행과 같음) 8 <u>지역대학</u>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_
<u>-17917</u>	-

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체이교르, 여스이 기치구 제11조(해외교류 · 연수의 기회균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해외교류 • 연수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대학 학생 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 야 하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 방대학 학생의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해외교류 및 연수계획 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지방대학의 장은 「고등교육 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 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대 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

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

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

세11조(애퍼亚규 • 연구의 기외인
등) ①
<u>지역대학</u>
②
<u> </u>
역대학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지역대학의
3 43 9 73 6
<u>지역대학을</u>
② <u>지역대학의</u>

학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의 수가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이 경우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지역의 시·군·구 간 균형있는 선발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해당 <u>지방대학이</u>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 3. (생략)
- ③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u>지방대학을</u> 졸업한 사람의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한다.
- ④ <u>지방대학의</u>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법학전문대학원은 제외한

<u>지역대학의</u>
1. (현행과 같음)
2 <u>지역대학이</u>
3. (현행과 같음)
③ <u>지역대학의</u>
<u>지역대학을</u>
<u>.</u>
④ 지역대학의

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선발 하여야 한다.

- 1. ~ 4. (생략)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 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발 실 적이 우수한 <u>지방대학에</u> 대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생략)
- 제16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u>지방대학의</u>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 하여 교원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지</u> <u>방대학의</u> 학술 또는 학문 연구 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 하여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 ·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 을 할 수 있다.
 - ③ (생 략)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

1. ~ 4. (현행과 같음)
⑤
<u>지역대학에</u>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국가 등의 지원) ①
<u>지역대학의</u> -
② <u>\text{\tint{\tint{\tint{\text{\tint{\tint{\text{\tint{\text{\tint{\text{\tint{\text{\tint{\text{\text{\text{\text{\text{\text{\text{\text{\text{\text{\tint{\text{\text{\tint{\text{\tint{\text{\tint{\text{\text{\tint{\text{\tint{\tint{\tint{\tint{\tint{\tint{\tint{\tint{\tint{\tint{\tint{\text{\tint{\tint{\tint{\text{\tint{\tint{\text{\tint{\tint{\tint{\tin}\text{\tint{\tint{\tint{\tint{\text{\tint{\text{\tint{\text{\tinit{\tint{\tinit{\tinit{\text{\tinit{\tinit{\tinit{\tinit{\tinit}}\tint{\tinit{\tinit{\text{\tinit{\tiin}\tinit{\tiit{\tinit{\tinit{\tiit{\tiin}\tinit{\tiin}\tinit{\tiinit{\tiit{\tiinit{\tiinit{\tiinit{\tiit{\tiinit{\tiii}\tiit{\tiit{\tiit{\tiit{\tiit{\tiit{\tiii}\tiit{\tiii}\tiit{\tiit{\tiit{\tiii}\tiit{\tiitit{\ti</u>
<u>역대학의</u>
<u>.</u>
③ (현행과 같음)
4

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 및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지방대학에 「산업교육진 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할 수 있다.

제17조(특성화 <u>지방대학의</u>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지방자 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지역투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u>지방대학을</u> 특성화 <u>지</u>반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u>지방대학이</u> 특 성화 분야를 육성하는 데 필요 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u>지방대학이</u>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u>지역대학에</u>
제17조(특성화 <u>지역대학의</u> 지정 등) ①
<u>지역대학을지역</u> 대학으로 ②
<u>지역대학이</u>
③ <u>지역대학이</u>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해당 <u>지방대학</u>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성화 <u>지방대학으로</u> 지정된 경우
- 3. (생략)
- ④ 특성화 <u>지방대학의</u> 지정이 취소된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 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및
- ⑤ 특성화 <u>지방대학의</u> 지정 및 취소, 이의신청의 기준·절차와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지방대학의 책무) ① 지방 대학은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 수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발전 계획 및 특성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대학은 우수하고 창의 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학 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학·복지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u>지역대학</u>
<u>의</u>
1. (현행과 같음)
2
<u>지역대학으로</u>
 3. (현행과 같음) ④ <u>지역대학의</u>
 ⑤ <u>지역대학의</u>
 ② <u>지역대학은</u>
<u>.</u>

- ③ 지방대학은 지역인재의 취업 확대를 위하여 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과의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u>지방대학은</u> 지역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의 장을 제공하고 평 생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19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 재 육성지원협의회) ① 지방자 치단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 재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학・산업체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 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생 략)

제21조(대학과 지역의 협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u>지방</u>
대학의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u>지방대</u>

③ <u>지역대학은</u>
· ④ <u>지역대학은</u>
제19조(<u>지역대학</u> 및 지역균형인
재 육성지원협의회) ①
<u>지 역 대 학</u>
지역대학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대학과 지역의 협업) ① -
지역대
<u> </u>
 기역대학

학의 협업체계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제22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지 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지 역협업위원회의 장이 둘 이상 일 경우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에 따라 <u>지방대학의</u> 학과 개편 및 교육과정 개선 등 고 등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 ⑦ (생 략)

<u>–1</u>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등) ①
<u>지역대학의</u>
② ~ ⑦ (현행과 같음)